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 안내

1. 관련

- 가. 보험급여과-1074호(2020.3.3.)
- 나.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2.3.7.)
- 다.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1191호, 2022.3.7.)

2.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분만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진 산모(자연분만, 제왕절개)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, 음압 수술실 여부 등과 무관하게 **한시적으로 300% 가산 수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.** (보험급여과-1191호, 2022.3.7.)

3. 이에 따라,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는 분만환자(제왕절개)에 대해 추가적인 수가 보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**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를 드리니,**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분만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**(대상환자)** 코로나19 확진환자*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진료를 받는 경우

*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 되는 경우 포함

○ **(주요내용)**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, **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0% 가산수가를 포함한 코로나19진료분은 행위별 수가제 적용**

○ **(적용기간)** 2022.3.18. 진료분부터 2022.4.30. 진료분까지 **한시적 적용**

※ 자세한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

붙임. 코로나19관련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(한시적)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, 대한산부인과학회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주무관 **김원희** 행정사무관 **윤민수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2. 3. 17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1417 (2022. 3. 17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보험급여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6 팩스번호 044-202-3934 / bliss071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